기상청 공고 제 2026 -1호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기 상 청 장

기상직 국가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 기상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상청 실시)

<table>
<tr><th>직 급</th><th>지역구분</th><th>선발예정인원
(총 39명)</th><th colspan="2">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th></tr>
<tr><td rowspan="2">기상직 7급
(기상주사보)</td><td rowspan="2">전국모집</td><td rowspan="2">일 반: 4명</td><td>제1차 시험</td><td>제2차 시험</td></tr>
<tr><td>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td><td>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td></tr>
<tr><td rowspan="3">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td><td rowspan="2">전국모집</td><td>일 반: 31명
장 애 인: 1명
저소득층: 1명</td><td colspan="2" rowspan="3">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td></tr>
<tr><td rowspan="2">지역구분</td><td>강 원: 1명
제 주: 1명</td></tr>
<tr><td>계</td><td>35명</td></tr>
</table>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2026년 채용시스템 일원화에 따라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 등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실시합니다.

※ 2027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2027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기준점수(등급)는 3급 이상입니다.

○ 기상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실시)

채용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일정 등 세부 사항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2명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2~3명	직류별(기상직류) 선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고문 참조** (* '26년 4월 공고 예정,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 6급(연구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민경채 포함)은 채용 수요에 따라 추후 별도 공고(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또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예정

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시 험 방 법

○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예시 >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 및 제6의4 규정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결격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개정·공포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라 기상청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기상청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6. 1. 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직 급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기상직 7급	5.11. 09:00~ 5.15. 21:00	5.16. 09:00~ 5.18. 18:00 (7.6. 09:00~ 7.8. 18:00)	제1차시험	7.10.	7.18.	8.19.
			제2차시험	8.19.	9.19.	10.29.
			제3차시험	10.29.	11.23.~11.26.	12.11.
기상직 9급	2.2. 09:00~ 2.6. 21:00	2.7. 09:00~ 2.9. 18:00 (3.23. 09:00~ 3.25. 18:00)	필기시험	3.27.	4.4.	5.8.
			면접시험	5.8.	5.28.~6.2.	6.19.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임)

4.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7급) 2026.5.11.(월) 09:00~5.15.(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6.2.2.(월) 09:00~ 2.6.(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구분(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개인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기상청 공고(202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구 분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비 청각장애인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청각장애인*	-	350점	204점	-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상기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7호)」 참고)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1.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1.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7급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6.7.18.(토)~7.20.(월)
	가산대상 자격증	2026.9.19.(토)~9.21.(월)
9급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2026.4.4.(토)~4.6.(월)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예보·관측 현업 등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6.4.4.인 경우, 2026.2.28. 현재가 기준이 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됩니다.

- **본 공고문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기상청 운영지원과** (☎042-481-7248, 7247)